

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

# 심 사 보 고

2003.10.24.(금)  
기획행정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3년 10월 4일

○ 회부일자 : 2003년 10월 6일

다. 상정일자 : 제2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○ 2003. 10. 20 :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 
심의의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박 환 규)

가. 제안이유

- 최근 자원봉사활동은 청소년, 여성, 직장인 및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이 참여하고, 활동범위도 사회복지 등 전 영역으로 확대되어 지역사회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어,
- 자원봉사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골자

- 자원봉사활동의 목적과 자원 봉사활동의 범위를 정함(제1조, 제2조)
-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설치, 기능, 조직구성, 자원봉사자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자원봉사의 활동기반을 구축하도록 함(제4조 내지 제7조)
- 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및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함(제8조)
-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지도·감독할 수 있도록 함(제9조, 제10조)
-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충청북도자원봉사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도록 함(제11조 내지 제16조)

## 3. 검토보고 요지

(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상 만)

-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검토한 바

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, 도민의 자원봉사에 대한 참여가 많아짐에 따라 도민의 자원봉사에 대한 자율성의 원칙을 보장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높은 긍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,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,

본 조례의 모범이라 할 수 있는 「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」이 2001년 10월 의원입법(안)으로 발의되어 제출되어 현재 국회에서 제류 중에 있는데, 이 법안 시행에 앞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될 불가피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, 본 조례안 제7조 제2항에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에도, 동조 제3항에서는 사업계획서와 지원 받은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서를 작성, 제출의무를 배제시킨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#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#### 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#### 6. 수정안요지

##### 가. 수정이유

종합자원봉사센터 구성원의 임명권자를 명확히 하고, 자원봉사위원회 위원 결원 시 재위촉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함.

##### 나. 수정 주요골자

- 안 제6조 제1항중 임명권자를 도지사로 명시함.
- 안 제13조제5항을 신설함.
  - ⑤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재위촉하며, 재위촉 위원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7. 심 사 결 과 : 수정안가결

8. 소수 의견 요지 : “없 음”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-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

##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제안년월일 : 2003. 10. 20.

제안자 : 김정복 의원의

### 1. 수정이유

종합자원봉사센터 구성원의 임명권자를 명확히 하고, 자원봉사위원회 위원의 결원 시 재위촉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함.

### 2. 수정 주요골자

- 안 제6조 제1항중 임명권자를 도지사로 명시함.
- 안 제13조제5항을 신설함.
  - ⑤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재위촉하며, 재위촉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##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 제1항중 “약간명을 둔다”를 “약간명을 도지사가 임명한다”로 한다.

안 제1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- ⑤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재위촉하며, 재위촉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## 조문 대비 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1조 ~ 제5조 (생략)</p> <p>제6조(조직구성) ①센터에는 소장 1인, 사무국장 1인, 운영부장 1인, 운영요원 및 행정요원 <u>약간명을 둔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조 ~ 제5조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제6조(조직구성) ①센터에는 소장 1인, 사무국장 1인, 운영부장 1인, 운영요원 및 행정요원 <u>약간명을 도지사가 임명한다.</u></p> <p>② (제정안과 같음)</p>
<p>제7조 ~ 제12조 (생략)</p> <p>제13조(구성·운영 등) ①~④ (생략)</p> <p>(신설)</p>	<p>제7조 ~ 제12조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제13조(구성·운영 등) ①~④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<u>⑤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제위촉하며, 제위촉 위원에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.</u></p>
<p>제14조 ~ (생략)</p>	<p>제14조 ~ (제정안과 같음)</p>

#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

## 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(이하 "자원봉사활동"이라 한다)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고 지방자치의 정착·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자원봉사활동의 범위)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사회복지 및 주민보건증진
2.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활동
3. 자원봉사 교육 및 상담
4. 방법활동·교통 및 기초질서계도
5. 재해·재난관리 및 구조 지원
6. 문화·관광·예술·체육활동에 관한 봉사활동
7. 주민복지 증진에 필요한 봉사활동

제3조 (도지사의 책무)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도민에게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.

## 제2장 종합자원봉사센터

제4조 (설치) 도지사는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제5조 (기능) 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자원봉사자의 모집·배치 및 교육

2. 지역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
3. 자원봉사단체, 기업, 직장 등에서 시행하는 자원봉사활동과의 연계 프로그램 운영
4.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 지원
5. 지역사회 자원봉사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

제6조 (조직구성) ①센터에는 소장 1인, 사무국장 1인, 운영부장 1인, 운영요원 및 행정요원 약간명을 도지사가 임명한다.

②센터에 두는 인원의 선발방법, 임기, 보수,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7조 (자원봉사자 등록 등) ①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.

②센터의 소장은 등록한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체는 센터 소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필요경비를 지원 받은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과 정산서를 작성·제출하여야 한다.

④센터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등록한 후 1년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
2. 자원봉사활동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
3. 사업 추진실적을 허위로 작성·제출한 경우

제8조 (센터의 지원·위탁운영) ①도지사는 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

③도지사는 센터운영의 전문성 또는 자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, 시민단체 및 종교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- 제9조 (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) ①센터소장은 매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센터소장은 매회계연도의 수입·지출계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센터소장은 수입·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, 이를 2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0조 (지도·감독)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운영·회계 및 비품관리 등 제반 사항을 지도·감독할 수 있다.

### 제3장 자원봉사위원회

제11조 (설치) 센터의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충청북도자원봉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제12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

1. 센터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
2. 자원봉사 관련 시책의 개발·조정 및 협의
3. 중·장기 자원봉사 정책방향의 설정
4. 자원봉사 사업과 관련된 주요사항

제13조 (구성·운영 등)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.

- ②위원은 자원봉사관련 단체 대표자, 유관기관 관계자 등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.
-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
- ⑤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재위촉하며, 재위촉 위원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제14조 (회의)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.

②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·관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.

제15조 (수당과 여비)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6조 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전에 설치된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.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□ 지방자치법

**제15조(조례)**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### □ 지방채정법

**제14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**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·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.

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2.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3.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
4.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(생략)

### □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

**제4조(보조 대상)**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2. 국고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3.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